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2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김혜련, 송명화, 김태호,
한기영, 임종국, 오한아,
김종무, 박순규, 김정태,
이영실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 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고령화시대와 함께 인구절벽 사태가 예상된 가운데, 특히 서울시는 0.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상황임.
- 이에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“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”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용품의 명칭을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함 (안 제2조제5호)
- 지원 대상아이를 전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6호)

- “보호자”에 출산 예정인 산모를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7호)
- 지원금액을 ‘15만원 이내’로 확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2항)
- 지원기간을 ‘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’로 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아이”을 “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보호·양육하고 있는”을 “보호·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출산축하용품 지원”을 “출생축하용품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출산을”을 “아이의 출생을”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, 같은 항 중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출생일부터”를 “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,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로, “출산축하용품의”를 “출생축하용품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한다.

1.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(다만,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(의료기관, 보건기관 발급)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생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2020년 4월 1일 현재 출생예정일 50일 전인 대상 아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"<u>출산축하용품</u>"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.</p> <p>6. "대상 아이"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'출생'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<u>아이</u>를 말한다.</p> <p>7. "보호자"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<u>보호·양육하고</u>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4조의2(<u>출산축하용품 지원</u>) ① 시장은 <u>출산</u>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<u>출산축하용품</u>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"<u>출생축하용품</u>"----- 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이</u>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<u>아이</u>를 -----.</p> <p>7. ----- ----- ----- <u>보호·양육하거나 출산 예정인</u> ---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(<u>출생축하용품 지원</u>) ① -- -- <u>아이의 출생</u>----- ----- 출 <u>생축하용품</u>-----.</p>

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.

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
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2. 3. (생략)

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,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, 별지 제3호 서식의 출

②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 15만원 -----.

③ 출생축하용품 -----

-----.

④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
출생일 이후 -----
----- 출생축
하용품 -----.

----- 출생축하
용품-----.

1. 출생축하용품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출생축하용품-----
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 출

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 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

2. 3. (생략)

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.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상 수령방식에 따른다.

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,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

생축하용품 -----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1.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(다만,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(의료기관, 보건기관 발급)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같음한다.)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출생축하용품 -----
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⑦ -----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1. 출생축하용품-----

2.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

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.

2. 출생축하용품을 -----
----- 출생축하용품의 -----

⑧ 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2항에서 ‘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’ 고 함에 따라 기존 지원금액인 10만원에서 추가되는 지원금액(대상 아이 1명당 5만원)에 해당하는 비용 발생
 - 같은 조례안 제2조(정의), 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에서 ‘출산’ 을 ‘출생’ 으로 개정하는 것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
 - 같은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7호와 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제4항 및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개정은 신청절차상 변경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
나. 전제

- 서울시 주민등록 통계상 2018년 기준 서울시 출생아는 58,074명임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은 대상 아이 1명 당 5만원임

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서울시 출생아가 매해 4%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0년 54,101명, 2021년 51,938 명, 2022년 49,860명, 2023년 47,865명, 2024년 45,951명으로 지원 대상 인원 산출
 - ※ 서울열린데이터광장-서울통계간행물-주민등록 통계-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평균 출생아 감소율은 연간 8.4%임(실제 주민등록 기준)
 - ※ 서울열린데이터광장-서울통계간행물-장래인구추계-출생아 수 추계(2015년 기준)에 따르면 향후

4년간 평균 출생아 감소율은 연간 0.5%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12,485,750천원(연평균 2,497,15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 계
		세입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 (안 제5조)	2,705,050	2,596,900	2,493,000	2,393,250	2,297,550	12,485,750
	소계(b)	2,705,050	2,596,900	2,493,000	2,393,250	2,297,550	12,485,750
□총 비용(b-a)		2,705,050	2,596,900	2,493,000	2,393,250	2,297,550	12,485,75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 ≙ 12,485,750천원
 - 2020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54,101명 × 50,000원
 - = 2,705,050천원
 - 2021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51,938명 × 50,000원
 - = 2,596,900천원
 - 2022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49,860명 × 50,000원
 - = 2,493,000천원
 - 2023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47,865명 × 50,000원
 - = 2,393,250천원
 - 2024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45,951명 × 50,000원
 - = 2,297,550천원